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과 통상협력과제

A study on Mutual Authentication of Copyright between Korea-China and Trade Cooperation

이찬도(Chan-Do Lee)

중부대학교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증 분석 | 참고문헌 |
| III. 한·중 저작권리 관련 시스템 비교·분석 | ABSTRACT |
| IV.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제를 위한 통상협력과제 | |

국문초록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 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저작권인증제도, 저작권법, 전문가집단면담(FGI), 한류콘텐츠

I. 서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성의 기준은 표현된 창작물로서 최소한의 창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로서 형식적 심사에 의해 등록되고 있을 뿐 저작물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할지라도 권리의 양도·양수와 같은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진정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제도상 저작권리의 이력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전적으로 저작권리자의 신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은 한류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양국간의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서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인증 서비스도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저작물의 권리변동이나 저작물성을 인증(공증)할 수 있다면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과 수출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는 취지이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인데, 향후 양국간의 관련 법·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한 인증기관으로서의 능력도 중요하며,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저작권리자 및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인센티브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제3의 인정기관으로서의 참여가 부담된다고 하며,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얻는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물론 저작권인증제도가 최근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고자 시도된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중 저작권 상호연동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인증개념과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실제 인증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전문가집단면

접(FGI)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저작권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선도국으로서, 모든 한류 콘텐츠에 저작권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일본과 동남아 및 세계 각국과의 상호연동체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증 분석

1. 저작권인증의 개념과 법적근거

저작권인증은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저작권법은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동 법에서는 권리자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6조).¹⁾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및 제37조(인증 절차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및 제12조(인증신청서 등)²⁾를 비롯해서 저작권인증업무규정³⁾도 마련되어 있다.

저작권 인증은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하는데 권리의 보유에 대한 인증과 더불어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고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⁴⁾

- 1)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2)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 3) 제1장 총칙,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3장 심사 등, 제4장 이의신청, 제5장 인증서의 폐지 및 정보 열람 등, 제6장 손해배상 등, 제7장 정보관리 및 시설보호, 제8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저작권인증업무규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2010-36호 고시에 의한 저작권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일 2011.12.30>
- 4)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즉, 권리인증이란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⁵⁾ 또한 이용허락인 증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행 저작권등록제도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인 반면, 권리인증은 실제적 심사를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보유사실 및 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증명한다는 게 특징이다. 국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정당한 권리 보유 사실 및 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은 보다 투명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인증은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는 일종의 공증이라 할 수 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효과로는 반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공적 추정력이 발생한다.⁶⁾

한편, 저작권 인증기관은 저작물 거래에 있어서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3의 기관으로서 가상 공간상 당사자 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일정한 내용을 확인(인증)하게 되는데, 이를 인증기관이라 정의한다(저작권법 제56조 제1항). 동 인증기관의 기능으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계약 체결 수행 및 관리 기능, 가입자(이용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기능, 발급된 인증서상 인증내용의 무결성 및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기능 제공 등이다.⁷⁾

2. 저작권인증의 필요성

첫째, 저작등록을 위한 인증이다.

한류의 최대 시장은 중국시장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한국저작물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판권보호중심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증 요청이 있을 때, 이를 통해서 저작권인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5) 예컨대, 이용허락 등의 계약체결,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들 수 있다.

6) 고유승·정병천·한예승, “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1.11, p.185.

7)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 연구』, 2010.8, p.9.

국내 음반제작사가 자사의 음반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저작권 등록기관은 한국저작물의 권리자 및 라이선스 확인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로 요청을 하고, 본 사무소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실체적 확인을 해 줌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저작권침해단속을 위한 인증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한류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해외 현지의 저작권 불법유통 및 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이나 구제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불법방지를 위해 공신력있는 현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제3의 기관으로부터의 저작물 권리인증이라는 시스템이 필요로 한 것이다.⁸⁾

셋째, 저작물 유통계약 촉진을 위한 인증이다.

저작물의 이용이 권리자의 이용허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허락은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저작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의 경우 특히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 유통파트너 측이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 등 저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하며 있어 해당 저작물 판권에 대한 권리증명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때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저작권인증이 해외유통의 촉매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표 1〉 저작권인증의 기대효과

구 분	기 대 효 과
권리자	저작권 인증의 활성화는 유통활성화 및 권리인증의 신뢰성 제고로 콘텐츠간의 융합 및 연계가 용이하여 복합 콘텐츠 인증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반의 공고화 기대
유통자	음악저작물의 체계적 저작권인증관리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신뢰성 있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확대 및 성장에도 기여
소비자	외국에서 한국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 서비스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 따라서 거래의 안정 및 신뢰보호로 음악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콘텐츠 이용으로 불법 저작물 이용에 대한 불안 차단
정 부	신뢰성있는 저작물의 유통과 이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합법 저작물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상생을 도모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인증 컨퍼런스』, 2012.11, pp. 3-4에서 발췌.

8)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전 세계 저작물 계약서를 위조 작성하여 저작물을 유통한 2007년도의 북경 진우동사건이 있었으며, 2008년 북경사무소와 미국영화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신고하여 책임자가 2008년 말에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저작권이 적절히 인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이며, 특히 외국저작물에 대하여 인증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건이다(상세서, p.90).

3. 선행연구 분석

저작권인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으로서 저작권 권리인증과 사용허락인증에 대한 법체계가 논의의 중심이다. 현행 저작권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인증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여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2012.11)의 컨퍼런스 자료에 의하면 음악저작물의 유통, 특히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인증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인증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저작권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⁹⁾

주요 내용은 저작권인증처리기간의 단축, 미제작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인증 여부 및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인증처리 절차 등이고, 또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저작권인증시스템 개선방안부터 저작권등록제도의 연계가능성 모색까지 저작권인증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0.8)는 한·중·일 저작권 상호인증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중국은 우리와 같은 저작권인증제도는 없으나 다만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중국판권보호중심(CPCC)¹¹⁾, 국제저작권거래센터(BICTC)¹²⁾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저작권상호인증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인증체계의 연동성확보 고려사항 및 상호인증 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 법·제도 정책분야에서의 연동성 위한 합의추진과 국가간 연동방식 및 교류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인증 및 관리에 대한 사례에서, CODA¹³⁾의 CJ(Content Japan)마크, 일본레코드 협회의 L마크,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디지털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 조사에서는 저작권인증에 대한 법·제도가 없는 대신에 저작권등록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고, 미국 저작권청과 미국 CCC¹⁴⁾의 저작권관리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오승중·최진원(2010)은 현행 제도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고,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심사 및 인증업무의 운영과 감독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⁵⁾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하고, 저작물성 유무,

9)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인증 컨퍼런스』, 2012.11.15.

10) 문화관광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 연구』, 2010.8.

11)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

12) Beijing International Copyright Trade Center

13)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14) Copyright Clearing Center

15) 오승중·최진원,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창작성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개선방향으로서는 인증기관의 지정과 권리인증, 이용자 권리인증, 인증기관의 감독지원, 법체계 등임을 밝히고 있다.

〈표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비교

구 분	본 연구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0.8)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에 대한 연구 (오승중·최지원, 2010)
연구내용	한·중 저작권인증을 위한 법제도/통상실무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한·중·일 및 주요 선진국 저작권리제도 비교연구 및 상호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심 연구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을 위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전문가집단면담(FGI)을 통한 실태분석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조사	문헌연구(법리적 해석)

Ⅲ. 한·중 저작권리 관련 시스템 비교·분석

1. 저작권등록제도와 비교

저작권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의 변동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이다. 무형물인 콘텐츠의 거래는 특성상 권리자의 확인이 쉽지 않고,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저작권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등록의 종류로는 권리등록, 권리변동 등록, 변경등록 등으로서 국가가 일정한 등록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발생은 무방식주의로서 이에 따라 등록의 법률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그 역할은 한계가 있다. 다만,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¹⁶⁾, 피의자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리인증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설령 등록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권리관계의 진실성 여부는 담보되지 않는다.¹⁷⁾ 한편, 저작권인증은 증명에 대한 확정력이나 저작권등록과 같은 법률상의 추

16)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격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7) 오승중·최지원, 전거서, p.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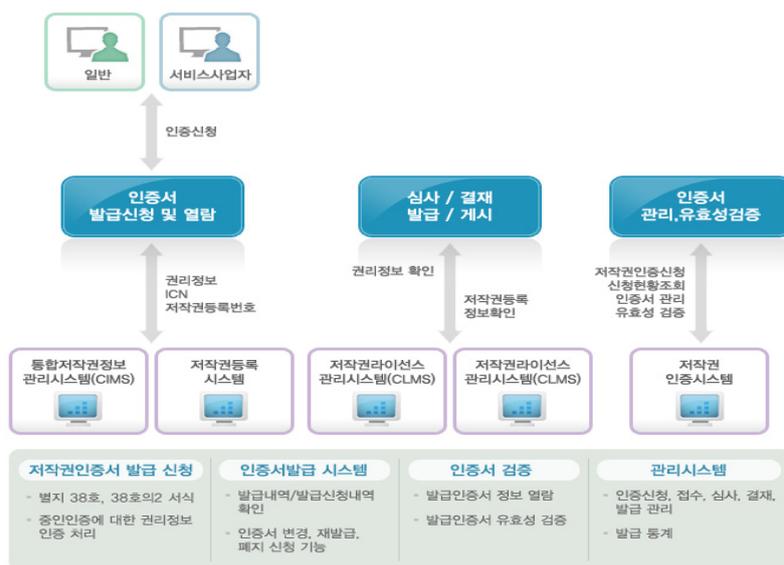
정력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인증은 신청자의 권리 소명에 대하여 전문단체의 확인을 통해 증명을 보완하는 ‘단체인증제도’로서 인증기관이 해당 권리에 대하여 ‘책임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¹⁸⁾ 따라서 해당 권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인증서 또는 인증정보를 활용하는 계약당사자 그 밖의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인증기관이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¹⁹⁾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서비스

200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유통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제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²⁰⁾

저작권 인증은 제출·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고,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저작물 등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한다.



<그림 1> 저작권인증시스템 개념도

18) 권리와 관련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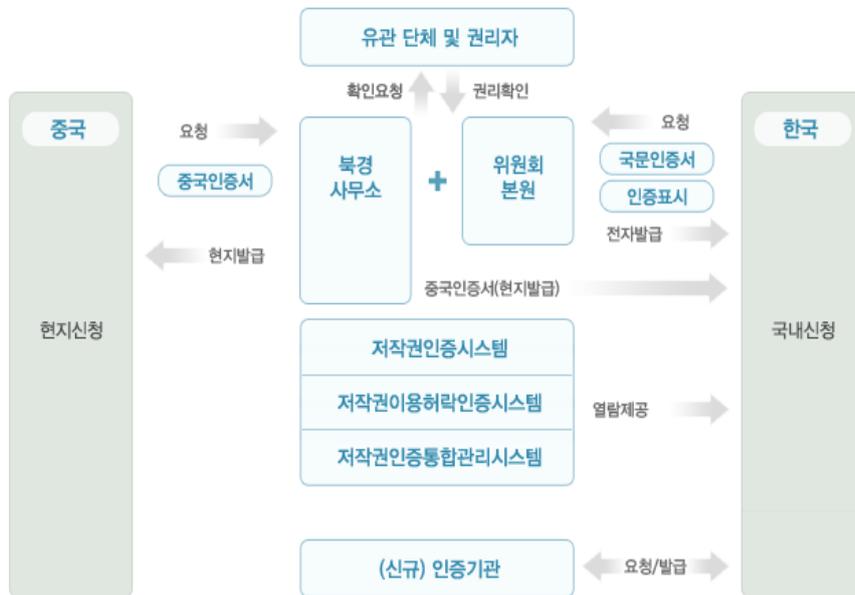
19) 저작권인증(<http://cras.copyright.or.kr>).

20) 2012년 2월 23일 저작권 인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2년 말까지 총 348건의 인증을 처리하였으며, 해외진출 저작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인증제도는 추후 국내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2014년 예정)이다.

저작권 등록사항은 국내 공시가 주요 목적인 저작권 등록제도와는 달리, 저작권인증은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의의와 활용분야가 차별화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증신청이 있을 경우 권리소명자료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²¹⁾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인증의 시스템은 저작권인증개요, 저작권인증신청, 인증정보열람 등이며, 이에 따라 저작권인증시스템, 이용허락시스템, 저작권인증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음악,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인증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저작물 권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의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관련 업무(중국인증)를 지원·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증서(중문인증서)는 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인증시스템을 통한 인증정보는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의 사용은 해당 지역에서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²²⁾



〈그림 2〉 한·중간 한류콘텐츠의 저작권인증 체계도

2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저작권백서』, 2013년, p.142.

22) 저작권인증(cras.copyright.or.kr) 참조.

3. 중국의 저작권리 지원제도

저작권에 대한 정품인증, 거래인증, 가치평가, 양도거래 등을 지원하는 등 우리와 유사한 지원제도는 있으나 저작권인증제도는 없다. 공인기관으로부터의 확인과정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인증제도와 유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처리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북경사무소, 미국의 영화산업협회 MPAA 등에서 중국관권보호중심의 계약 저작물의 권리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과정으로 인해 가짜확인서의 적발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²³⁾

중국관권보호중심은 저작권 유통을 위한 기획기능, 정품인증기능, 불법복제로부터의 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인증기관을 지정해 주고, 인증기관은 권리관계 확인 요청이 들어 온 저작물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 주는 방식이다.²⁴⁾

즉, 특정 저작물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신탁·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지를 확인 요청하고 이들은 자신의 것이 맞는 경우 인증을 해 줌으로써,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탁관계에 있는 ‘권리자 스스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임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제3자의 확인을 구하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는 차이가 있다(오승중·최진원, 2010).

우리의 저작권거래소와 비슷한 기능인 국제저작권거래센터는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거래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저작권에 대한 인증과 거래를 위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가치연구, 저작권의 국내외 양도거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불법복제물 유통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신탁업무까지도 국가관권국이 개입하고 있다. 중국관권보호중심과는 ‘한·중저작권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06.4), ‘한·중판권교역 및 보호협력체계 건립추진 공동선언’(2009.4) 등 한국과의 통상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이 기업의 이윤확대를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차원에서 가치연구를 하고 있으나 중국은 저작권인증을 통한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2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게서, p.96.

24) <http://www.ccopyright.com>

〈표 3〉 한·중 저작권인증 및 지원제도

국가	핵심기구	법·제도	시스템
한국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제2조(정의) 33항(“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 ·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및 제37조(인증 절차 등) ·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및 제12조(인증신청서 등)	· 온라인 저작권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2012.2 서비스제공)
중국	중국판권보호중심	· 저작물 출판과정에서 계약서 등록 의무화 · 계약서 등록에서 저작권 확인필요 · 제도적으로는 미비	· 오프라인을 통한 유력기관에 확인 · 시스템 구축되지 않음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 연구』, 2010.8, p.97.

한편,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저작권 인증과 관련된 법·제도는 없고 저작권 등록이 인증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기 위해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에서 CJ(Contents Japan) 마크는 부착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10) 이러한 CJ마크는 저작권 인증제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정품 음악·영화 CD 등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정품 콘텐츠와 불법복제물을 쉽게 구별하기 도입된 제도이고, 개별권리자나 이용허락에 대해 입증하는 제도는 아니다.²⁵⁾

또한 일본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 RIAJ)의 음악콘텐츠 디지털 식별인 L마크는 음원·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것임을 의미하는 마크이다.²⁶⁾ 메인 화면이나 콘텐츠 구입을 위한 화면 또는 영상 재생화면 등에 L 마크를 부착하여 인증여부 확인, 인증서 관리, 적법한 이용허락 저작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권리자 스스로 자신이 이용허락 했음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증과 구별된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10)

미국의 경우도 저작권인증이나 이용허락인증과 같은 법·제도나 정책은 없으며, 전통적으로 저작권등록제가 관례화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저작권의 법적인정을 받고 있다. 저작물 등록에 따른 저작권 소유에 대한 공식 기록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적 증거 입증자료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권리인증에 해당되는 공신력있는 제3자의 입증이라는 측면과도 비슷하다. 또한 저작권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

25) <http://www.coda-cj.jp>

26) <http://www.riaj.or.jp>

야 한다는 것과, 저작물 등록이 미국 관세청(US, Customer Service)에 등록 기록함으로써, 저작물 사본의 불법 수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10).

〈표 4〉 주요국의 저작권 권리보호 제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제도	저작권 인증서비스 - 권리인증 - 이용허락인증	정품인증제(정품인증을 득한 S/W의 인증확인서발급)	CJ마크	L마크	저작권 등록제
대상 콘텐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저작물	중국에서 제작된 S/W 콘텐츠	일본에서 제작된 저작물	법적으로 이용 허락을 득한 음악저작물	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
특징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이 저작물의 권리인증(정당한 권리자 인증)	인증기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정품확인	· 상표권화 · 권리자 자신이 저작권 이용 허락했음을 확인 · 저작물에 CJ마크 부착시켜 유통 · L마크가 부착된 음악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제공		· 저작권 소유에 대한 공식기록 보유 · 법률적 증거입증 자료 · 저작물사본의 불법수입 등으로부터 보호
운영주체	한국저작권위원회 (KCC)	중국판권보호중심	콘텐츠해외 유통촉진기구 (CODA)	일본 레코드협회 (RIAJ)	미국저작권청
시행년도	2012.2	2003	2005	2008	1909
비고	*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저작권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별도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대외거래에서 자국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인증과 일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음. 그러나 저작권 확인을 위한 등록증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작권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는 많은 법적 지원혜택을 부여함.				

*주)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일본의 CODA, RIAJ 등의 내용에서 요약 발췌.

IV.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제를 위한 통상협력 과제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한·중 저작권인증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기기입식면접조사표(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에 의한 전문

가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는 저작권인증이 아직 학계나 업계에서 일반화 되지 않은 다소 생소한 제도인데다, 특성상 전문가적 수준을 요구함에 따라 표본집단 추출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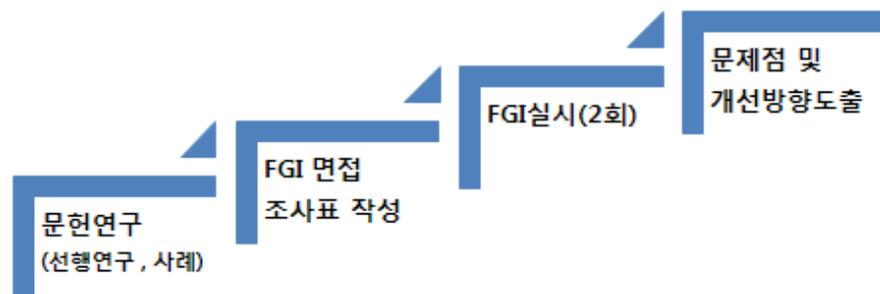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중간 저작권인증 시스템의 법·제도 및 운영, 통상협력 등의 1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셋째, 완성된 면접조사표를 토대로 전문가집단면접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넷째, 면접조사표에 없는 내용들도 토의내용에 포함되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다.

전문가집단면접법은 통계적 수치를 얻기 위한 조사와 구별되는 소수전문가들의 인식조사인 정성적 평가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국시장에서 한류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연구의 흐름도

2. 표본설계

전문가집단면접은 소수의 동질적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면접으로서 상업적 마케팅조사에서는 집단별 6-12명의 소비자와 면접을 하며, 제품관련조사에서는 150-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는 전자의 경우로 판단되며, 20명으로서 10명의 전문가들이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참여자는 저작권인증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 관련신탁단체 등이다.²⁷⁾

3. 분석내용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인 측면과 통상·실무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 법·제도적 측면

현행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증업무규정이다. 이 중에서 저작권법 제56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저작권인증업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29조 등이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다.

- 통상·실무적 측면

한·중 저작권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민간차원의 협력, 인증기관간 협력, 시스템상의 과제들이 주요 현안과제로 나타났다.

〈표 5〉 전문가집단면접(FGI)의 인터뷰 내용

구 분	관련 법률/통상현안	설문/면담항목
법·제도	저작권법 제56조	인증기관지정 및 지정요건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인증기관지정 및 지정요건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정당한 권리자의 인증
		유효기간
	저작권인증업무규정 제14조	심사의 방법
	제15조	심사기간
	제29조	손해배상
통상·실무	한·중협력강화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서 인증 협력
	한·중저작권인증효력의 문제	한·중간 상호인증에 대한 법조항 추가, 상호인증의 운영 등
	저작권인증을 위한 심사대상	저작물 심사대상의 불명확성
	저작권인증 서비스확대	주요국별 언어로의 인증서 발급
	등록제와 인증제의 통합운영	양 제도를 연계운영하는 방안 및 이점
	인증제도의 범위	장래 제작될 영상저작물의 조건부 인증제 여부
	인증기관의 지원책 미비	시스템 표준화, 기술적 협력 등
	인증자의 법적 이점 미비	저작권인증자로서의 법적효과 미비 등
	이용허락 인증	현실적 유통사실에 대한 인증 여부
	인증제도 홍보	국내외 홍보 필요성
	상호인증의 기술적 표준화	현행 기술 및 서비스 운영방식에 중국측 참여 방안
	한·중저작권인증포럼 추진	지속가능한 포럼 및 협의체 구성, 주요 한류국에 대한 컨설팅 여부

27) 2014.1월 이메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교수와 전문가 및 신탁관리단체로 구성되었다.

4. 분석결과 및 개선방향

1) 법·제도적 차원

콘텐츠의 저작권리를 공증하는 저작권인증체계는 국가간 연동성의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저작권인증과 관련 체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사례로서 현실적으로 국가별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가 없으며, 기술적 환경과 산업구조도 차이가 많다. 만약 우리나라가 한·중을 포함한 한·일, 동남아, 미국 등과의 저작권 상호인증을 지향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간 온라인 상호인정 또는 상호연동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저작권인증업무규정 등 관련 법과 제도적 정비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 및 주요 국가들이 저작권 인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적 저작권인증체계의 연동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간 기술적인 표준화 및 인증관련 정책, 서비스와 관련된 운영 등의 합의가 뒷받침됨으로써 한류콘텐츠의 건전한 유통과 수출촉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전문가집단면접(FGI)결과 :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제도	인터뷰(FGI) 결과	
	전문가 인식(문제점)	개선방향
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항 및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항의 인증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으로서의 역량문제 손해배상의 문제 신탁관리단체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신의 관리저작물을 인정하는 모순점 인증위험에 따른 형사 및 면책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위원회의 정보부재, 예산, 인력부족 및 손해배상능력의 문제 등이 있으며 특히 리스크관리 능력이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담보능력 강화 필요성(예 : 전자서명 제26조 배상책임). 신탁관리단체 자신의 신탁관리저작물에 대해 자기스스로가 인증하는 경우임. 따라서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제3의 인증기관 필요성 더욱이 손해배상 등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증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할 우려도 예상됨. 즉, 인증사실의 오류 시 책임문제 우려. 이를 위해 허위 신증신청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도입,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면책규정 등 명문화
시행령 제 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의 인증기관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업무 수행관련 손해배상능력의 기준부재 인증서발급을 위한 설비 및 보호설비의 기준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요하는지, 인증서 생성·발급을 위한 설비기준과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어느정도 갖추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

시행령 제37조(인증 절차 등) ②항의 정당한 권리자의 인증	정당한 권리자로 인증하며 있어 저작물성도 전제임. 현행 법·제도하에서 불충분함	· 저작물성은 창작자 및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 따라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여부, 복제, 2차적 저작물 등 저작물성의 판단과,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현행 인증업무규정에서 제시된 제3조(업무의 범위), 제13조(심사의 주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 제기. 특히 심사의 주체를 위원회 주관 하에서 외부전문가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다양한 인력풀 제도 및 제3의 단체/법인도 고려할 만함.
시행령 제37조(인증 절차 등) ④의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불명확하며, 권리관계 변동사항의 신고의무화 필요성	·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권리관계도 변함. 즉 정당한 권리자가 변동될 경우의 유효기간이라는 의미가 유효기간 동안 인증서를 관리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 · 현재 권리관계 등의 변동시 인증받은 자의 자진 신고없는 경우 외는 권리관계 등의 변동사항 파악이 불가능. 따라서 유효기간내에 인증서의 권리관계 등의 변동발생시 그 변동사항의 신고의무화 필요성
업무규정 제14조(심사의 방법) ①항의 심사관의 심사	심사관의 실질검사 기능 필요	· 저작권신탁단체 등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로서 인증사실의 오류로 인한 책임문제. 따라서 심사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고 사실여부만을 심사하며 실질검사 기능(조사, 검사 등을 위한 법적 강제력 부여)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업무규정 제15조(심사기간)	콘텐츠의 유통수명을 고려한 저작권인증심사기간 단축 필요성	· 현행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저작권등록:4일). 그러나 콘텐츠의 유통주기 - 방송/영화콘텐츠: 온라인서비스 후 1주일 이내 매출 70% 발생 또 수많은 콘텐츠가 생성
업무규정 제29조(손해배상)	인증업무에서 야기된 리스크 담보가 없다면 한류콘텐츠의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될 것임.	· 현재 인증업무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만 인정(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결제 및 인증서 생성과 발급 등 서비스자체에서 발생하는 손해)하며, 사실상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리스크인수를 위한 보험제도의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주) 법(저작권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업무규정(저작권인증업무규정)

2) 통상·실무적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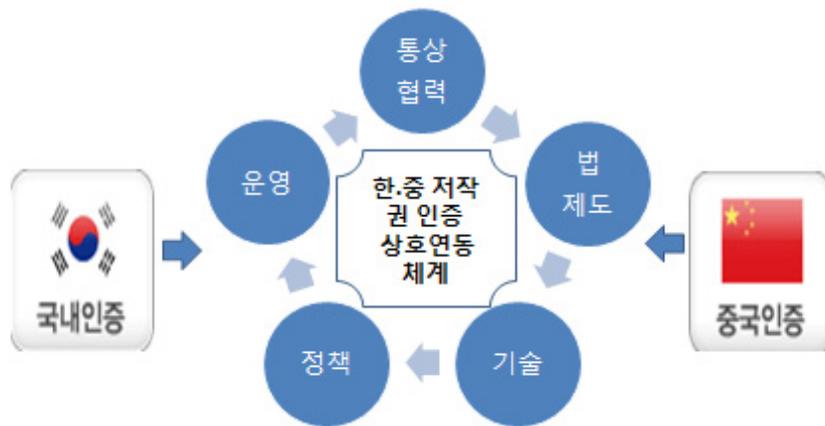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권리인증과 이용허락 인증을 활성화시키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당사자간에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의 피해는 저작권리자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자 지적재산권 관리에서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만약 저작권인증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지적된 통상 현안으로서는 저작권인증에 대한 중국현지에서의 인식제고, 인증효력문제, 인증서비스 확대, 홍보, 상호기술연계 및 표준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전문가집단면접(FGI)결과 : 통상·실무적 현안 및 개선방향

인터뷰 결과	
전문가 인식 (통상/실무적 현안)	개선방향
인증에 대한 한·중협력강화	중국현지 법원에서 인증서 불인정 사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서 인증을 위한 한·중간 협력 강화 필요. 향후 중국 외의 지역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성 대두.
한·중간 저작권인증효력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중간 저작권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닌 협력 및 홍보차원의 수준임. 저작권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간에 인증에 대한 효력이 선결과제임. · 한·중 저작권 인증체계의 상호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차이점 분석 및 국가간 상호인증 효력에 관한 법조항 추가 · 포럼, 설명회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한 한·중간 권리인증 수용노력 필요 · 한·중간 저작권 상호인증의 효력을 국가차원 또는 민간차원으로서의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
저작권 인증을 위한 심사대상	현행법의 한계로서 저작권인증을 위한 저작물의 심사대상이 불명확하여 대중수출 및 유통에 걸림돌로 예상됨(예: 저작물성여부, 저작권접권자의 포함여부 등)
저작권인증서비스 확대	엔-콘텐츠의 수출다변화 및 수출증대를 고려한 주요 국별 언어로의 인증서 발급(예: 일본 인증서)
등록제도와 인증제도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진정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경우 등록제도와 인증제도 모두 활용할 수 있음. [영상저작물의 예] 비용, 심사기간, 법률적 효력, 계약내용의 비밀유지 등 고려할 때, 등록제도의 활용이 유리 따라서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예: 하나의 창구 또는 하나의 웹사이트 상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등록증 외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요구시 저작권인증서 제시하도록 함)
인증제도의 범위	현재 인증제도상으로는 제작 완료된 영상저작물만 권리인증을 받을 수 있음. 해외수출시 전체 제작편수가 판매된다는 점에서 장래 제작될 영상 저작물에 대한 조건부 인증제도 도입 필요.
인증기관의 지원책 미비	표준화, 한·중간 협력 및 기술적 지원, 관리감독 등
인증자의 이점 미비	저작권인증자로서의 법적효과(예: 등록제의 대항력 등) 미비, 인증저작물 불법이용에 따른 제재방안 필요
이용허락 인증	현실적 유통사실을 대한 인증(또는 공증)(예: 일본의 CJ 및 L 마크도 유용한 사례)
인증서 홍보	국내/중국 인증의 국내외 홍보
상호인증의 기술적 표준화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적 부분 및 서비스 운영방식을 표준화로 하면서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 모색
한·중 저작권인증포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및 정책협이나 기술적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럼 또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 한·중 외에 주요 한류 시장인 일본, 동남아에 대한 저작권인증 정보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이상과 같이 한·중 저작권인증 제도의 활성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동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한·중간 저작권인증은 한류콘텐츠의 수출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현실적으로 미비한 법·제도, 내부역량문제, 중국과의 공조체제 문제 등 산재한 현안이 많다. 특히 중국은 오프라인으로 계약서 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우선적으로 온-오프라인상의 연계를 통한 상호인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정책, 운영체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지속적인 통상협력이 요구된다.



<그림 4> 한·중 저작권인증시스템의 현안과제

V. 결 론

저작권인증의 실시 목적은 한류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대외수출경쟁력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리라는 취지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북경사무소를 통해서 발행되는 중국인증서는 저작권인증제도가 지향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 및 통상협력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첫째, 법·제도적인 개선방향이다.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

해서 제3의 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담보능력 강화의 필요성 및 신탁관리단체 자신의 관리저작물인증보다는 제3의 인증기관의 인증 필요성, 인증기관의 인증위험에 따른 형사 및 면책규정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 시행령 제36의 인증기관 요건에서 배상능력기준, 설비 및 보호설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동 시행령 제37조(인증절차 등)의 정당한 권리자 인증에서는 저작물성의 판단, 권리관계 파악에 대한 보완, 특히 심사의 주체에 대해서 다양한 인력풀제도 및 제3의 단체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37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불명확하다는 것과, 권리관계 변동사항의 신고의무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저작권 업무규정 제14조(심사의 방법)에서 심사관의 실질검사 기능인 조사, 검사 등의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동 규정 제15조 콘텐츠 유통수명을 고려한 저작권인증 심사 기간의 단축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동 규정 제29조(손해배상)에 대해, 가령 인증업무상에서 야기된 리스크담보가 없다면 한류 콘텐츠의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이라는 본래 취지가 반감되리라는 우려도 있다.

둘째, 통상·실무적인 개선방향이다.

우선 저작권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한·중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이 선결과제이며, 법·제도적 차이점 및 기술적인 연동성 등 다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인증을 위한 심사대상이 불명확하여 대중수출 및 유통에 걸림돌로 예상되며, 향후 저작권인증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라도 주요국별 언어의 인증서 개발, 등록제도와 인증제도의 상호보완적 운영가능성 검토, 장래 제작될 영상저작물에 대한 조건부 인정제도 도입, 인증기관의 지원책 강화, 저작권인증자로서의 법적효과 강화, 현실적인 유통사실에 대한 인증, 국내 외홍보, 상호인증의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 개선내용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인증 시스템의 성공여부는 한·중간 저작권 상호인증 시스템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며, 그 선결과제로서는 법·제도, 기술, 정책 및 운영 등의 연동으로 요약된다. 특히 저작권인증이 양국간의 경제적 실익을 안겨다 준다는 인식하에 상호연동을 위한 지속적인 통상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고유승·정병천·한예승, “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1.11.
- 오승중·최진원,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저작권법 시행규칙[시행 2012.10.18][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2012.10.18,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3.10.17][대통령령 제24797호, 2013.10.16,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저작권법[시행 2014.7.1][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중국국가관권국, 「제9차 한중저작권포럼」, 2013.9.
- 문화체육관광부·중국국가관권국, 「제8차 한중저작권포럼」, 2012.9.
- 문화체육관광부·중국국가관권국, 「제97 한중저작권포럼」, 2011.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 연구」, 2010.8,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12.
-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해외에서의 SW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중국·일본을 중심으로-」, 2006.12.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중국 저작권 보호 체계 및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방안 연구」, 201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년 저작권인증제도 활성화 워크숍」, 2011.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백서」, 2013.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인증 컨퍼런스」, 2012.11.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총괄기관 역할 정립 연구」, 2010.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연구」, 2010.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중 FTA 문화분야 의견 수렴회」, 2012.3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업무규정」[제정 2011.12.30][개정2013.1.16]
- <http://cras.copyright.or.kr>
- <http://www.copyright.or.kr>

<http://www.ccopyright.com>

<http://www.e-bq.com>

<http://www.mcsc.com.cn>

<http://www.copyright.com>

<http://www.ascap.com>

<http://www.ozmo.com>

<http://www.coda-cj.jp>

<http://www.jasrac.or.jp>

<http://www.riaj.or.jp>

ABSTRACT

A study on Mutual Authentication of Copyright between Korea-China and Trade Cooperation

Chan-Do Lee*

When the Korean Wave was sweeping over China, Asia, Other Countries, Some people worried that the ambiguity of the copyright act would obstruct export of the entertainment cont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copyright authentication was introduced in the copyright act, enforcement for its, etc.

There are two authentication systems at copyright. One is right authentication protected by copyright, Other one is licence authentication received from the owner. This study is meant to seeking the problem of insufficient regulation related to copyright authent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FGI in this study, the existing system does not support a proper and specific way how to suggest a long term perspective in the transaction of Korean Cont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ey to success of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depend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copyright mutual authentication.

To do so, In reality, laws, institutions, technologies, policies, and operations, etc. should be Inter-operability. Also we should realize that this system gives mutual benefits at trans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it is important for two countries to effort trade cooperation continuously.

Key Words : Korean Wave, Copyright Authentication, FGI, Trade Cooperation

* Professor, Joongbu University